



## 임대 보호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ERAP)은 임대료 체납, 일시적 임대료 지원, 공공요금 체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무주택 또는 주거 불안정을 경험할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구제 대책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세입자와 집주인은 모두 안도감을 가지고 일정한 보호를 제공받게 됩니다.

### 세입자 보호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RAP를 신청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자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퇴거를 중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신이 제공됩니다. 집주인이 ERAP 지급을 수락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았거나 이 지급 이후 12개월 동안 임대료가 만료된 경우 세입자를 퇴거할 수 없습니다. 단, 세입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모든 임대료를 계속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ERAP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집주인 보호

집주인은 ERAP 지불을 받는 조건으로 이러한 자금이 해당 기간 동안 세입자의 전체 임대 지급 의무를 충족한다는 데 합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참가하는 집주인이 다른 사유로 세입자를 더 이상 퇴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입자가 팬데믹 이전에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향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해당 임대 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거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하는 집주인은 ERAP 지급금을 수령한 후 12개월 이내에 만료된 임대 또는 임차 유지의 사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지만, 이러한 합의는 다른 이유로 퇴거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퇴거 보호 조치는 주택 단지가 4개 미만의 단지를 포함한 건물이고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일차 주거지로 해당 단지를 즉시 점유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온라인([nysrenthelp.otda.ny.gov](https://nysrenthelp.otda.ny.gov))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otda.ny.gov/ERAP](https://otda.ny.gov/ERAP)를 참조하거나  
844-NY1RENT(844-691-7368)번으로 전화하십시오.

